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0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관내 합창단 현황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합창단 관련 세부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신설(안 제2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2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39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문화예술단체에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추가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합창단 관련 세부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신설(안 제2조제1항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여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고보조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
2. 문화예술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
3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4.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